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147

발의연월일 : 2023. 12. 29.

발 의 자 : 전봉민・金炳旭・김용판
박성민・박성중・안병길
이종성・이헌승・정동만
정운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한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로 의료 격차가 심해지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은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은 민간병원과는 달리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의학교육・연구 등의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대학병원이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봉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등) ① 대학병원은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접수 방법 및 절차, 모집·접수된 기부금품의 사용 및 배분, 공시의 구체적인 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등) ① 대학병원은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접수 방법 및 절차, 모집·접수된 기부금품의 사용 및 배분, 공시의 구체적인 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